<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6.10.28)

다올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BF131)

투자 위험 등급 5 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다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고위험고수익채권을 포함한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40% 이하를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여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위험,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다올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국내 채권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하고, 그 밖에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획득하여 수익자에게 금융투자상품등에의 투자를 통한 자본증식의 수단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투자전략** [채권운용 전략] ① 하이일드 채권 운용전략 - 투자대상 채권은 BBB+ 등급 중심의 하이일드 회사채로 한정하며, 엄격한 신용도 분석을 통한 안정적 채권 발굴에 주력 - BBB+ 등급 중심의 하이일드 회사채 중 유동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며, 우량 등급 채권 대비 높은 수익률 추구 ② 기타채권 운용전략 - 단기물 중심의 국고채/통안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시장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하고, 안정적인 이자수익 추구 - 만기 1~2년 수준의 채권에 투자하고, 해당자산의 만기 시 유사한 만기를 보유한 채권으로 교체 투자 [주식운용 전략] ① 공모주 운용전략 - IPO 와 유상증자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5% 이상 우선배정 혜택※으로 공모주 투자부문의 성과 제고 - 철저한 상향식 분석기법(Bottom Up Approach)을 통한 투자종목 선정 - 중장기 투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의 경우 단기 차익실현보다는 중장기 투자를 통한 펀드수익률 극대화 지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은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부여됩니다. 다만, 이는 관련 규정 및 정책 변경 등으로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블록딜 운용전략 - 블록딜 투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으로 한정하며, 블록딜 총 투자비중은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3% 이내로 투자 - 시장가 대비 할인율이 높은 종목에 적극적으로 블록딜에 참여하되, 유동성을 고려하여 수량 신청

- 주가 하락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블록딜 다음날 전량 매도를 원칙으로 함

*** 비교 지수: 국고채1년 50% + 회사채 BBB+ 1년 50%**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연)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8% 이내	1.00%	0.50%	0.72%	1.007%	183	288	397	623	1,28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40%	0.90%	1.12%	1.407%	144	292	444	760	1,685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의 0.4% 이내	0.75%	0.25%	0.53%	0.757%	117	197	279	449	94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95%	0.45%	0.71%	0.957%	98	199	302	517	1,146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1년 2025/07/11 ~ 2026/07/10	최근2년 2024/07/11 ~ 2026/07/10	최근3년 2023/07/11 ~ 2026/07/10	최근5년 2021/07/11 ~ 2026/07/10	설정일이후 2015/07/11~ 2026/07/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16-07-11	2.03	3.03	4.36	3.16	4.87
비교지수	2016-07-11	2.63	3.80	4.49	3.66	3.16
수익률 변동성	2016-07-11	1.40	1.15	1.21	3.10	3.57

(주1)비교지수: 국고채1년 50% + 회사채 BBB+ 1년 5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설정일 이후 수익률의 경우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에 미설정 또 전부해지된 종류의 수익률은 표기되지 않으며, 전부 해지 후 재설정된 종류의 경우에는 재설정 이후의 수익률이 표기됩니다.
(주5)기재가 생략된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인력 (2026.09.30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운용경력년수
			집합투	운용	운용역	운용사	

			자기구수	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구경서	1978년	책임(팀장)	26개	16,300억	2.47	4.13	7.48	6.42	14 년 8 개월
신하늬	1988년	책임(팀장)	9개	192억	-	-	7.48	6.42	9 년 7 개월
이혁재	1984년	부책임(팀장)	34개	5,090억	7.01	5.55	7.48	6.42	5 년 6 개월
이진우	1999년	부책임(사원)	33개	1,839억	-	-	7.48	6.42	7 개월
정성민	1999년	부책임(사원)	-	-	-	-	7.48	6.42	-

(주1)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등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1년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하이일드펀드 가입금액 3천만원까지만 분리과세되고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미적용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분리과세 적용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개별 기업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개별 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할 가능성과 개별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및 공모주 우선배정에 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45%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하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기 투자비율 미 충족시에는 분리과세 및 공모주 청약 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증권 위험	하이일드 증권 및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지는 고위험고수익채권등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들로, 투자적격등급의 채권들보다 높은 금리, 신용 및 유동성 위험 등이

	수반됩니다. 하이일드채권 등은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 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17시 이전:2영업일 기준가 매입 · 17시 경과 후: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17시 이전: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17시 경과 후: 4영업일 기준가 5영업일 지급**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daol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구 분	주요 내용
가입 자격	가입제한 없음 (단, 세제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
가입 기한	2023.06.12부터 2024.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계약 기간	1년 이상 *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미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번호: 02-788-8400/ 인터넷홈페이지: www.daolfund.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효력발생일	2026년 11월 4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table>
<tr><td>참조</td><td>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3">판매수수료</td><td>수수료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후취</td><td>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3">판매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슈퍼(S)</td><td>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 rowspan="6">기타</td><td>무권유저비용(G)</td><td>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개인연금(C-P)</td><td>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퇴직연금(CP)</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기관(F)</td><td>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및 기금,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투자자 등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랩(W)</td><td>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하거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고액(I)</td><td>납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거래자가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daolfund.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daolfund.com)